이달의 초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쟁점과 정책과제

이주연

자립준비청년의 가정위탁 경험과 과제

|이정은·이주연|

가정보호의 대안적 사례 탐색과 과제

|임성은|

가정 밖 청소년 탈시설의 쟁점과 과제

|김희진|





가정보호의 대안적 사례 탐색과 과제¹⁾

Alternative Care to Family-Based Care for Children in Out-of-Home Care: Experiences and Challenges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의 특성과 국내외 아동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의 소규모 화나 탈시설화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보호 활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보호와 관 련,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대한 해석이 관계 당사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보호대 상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의 필요성과 의존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가정보호로의 전환은 과도기적인 상황 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정보호의 대안적 사례로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 시도 경험과 공동생활 가정의 원가정 복귀 중심 보호 경험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온전한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오랜 기간대안양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많은수의 아동을 대규모로 보호하던 아동복지시설은

2000년대 이후 보호대상아동의 특성과 국내외 아 동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설의 소규모화나 탈 시설화, 기능 전환 요구에 지속 직면해 왔다.

이와 함께 개별 보호아동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시설의 집단보호 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시설 중심 가정 외 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

¹⁾ 이 글은 이주연, 이정은, 이상정, 임성은, 조정우, 김희진. (2023).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장 제3절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하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 기반의 보호를 활성화하라고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 원회, 2020). 유엔총회에서도 시설보호는 가정에 가장 가까운 소규모로 운영하도록 권고하였다(이 주연 외, 2023). 우리 정부는 시설보호에서 탈피한 가정보호 중심의 가정 외 보호 노력을 지속해 왔으 며, 최근에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와 탈시설화 정책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9; 이봉주 외, 2022).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는 가정 형태의 거주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현재 로서는 공동생활가정이 시설보호 중 가장 가정 형 태 보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 형태 의 거주환경이나 소규모 인원이 보호받는 공동생활 가정은 명백히 가정보호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여전 히 시설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시설의 소규모화와 가정에 가까운 형태의 보호를 제공하려는 현장의 노력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비록 시설보호에서 가정보호로 전환하기는 어렵지만, 아동양육시설의자체적인 소규모화 시도 경험과 공동생활가정의 원가정 복귀 중심 보호 사례를 기관장 인터뷰를 통해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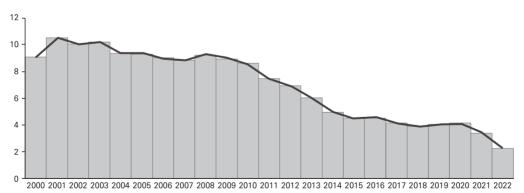
먼저 보호대상아동의 특성과 보호조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호대상아동의 수와 특성의 변화

우리나라의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아동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의 수도 매년 동반 감소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통계청 KOSIS,

[그림 1] 보호대상아동 수 추이(2000~2022년)

(단위: 천 명)



출처: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보건복지부, 2024,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Bl/mBin/EB chDtlPBgeDetBil.do?idx_cd=1421#

2024).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에는 전국 아동복지 시설의 정원 충족률 역시 70% 미만 수준으로 낮아 져 시설의 운영과 기능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보호대상아동의 감소 추세는 소규모 인원으로의 시설보호 또는 아동 1인 중심 가정보호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가능함을 시사한다(임성은 외, 2019).

[표 1] 보호대상아동 정원 충족률 현황(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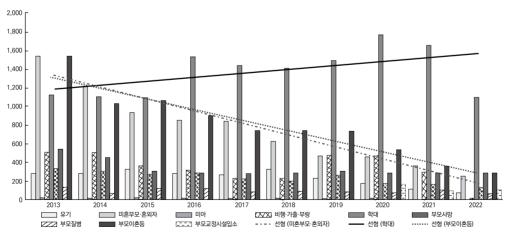
(단위: 명, %)

		=1/			25.0	-1-1-1	
아동복지(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연도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연도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2018	17,624	12,193	69.2	2018	3,830	2,872	75.0
2019	17,325	11,665	67.3	2019	3,951	2,949	74.6
2020	16,540	11,356	68.7	2020	4,058	3,126	77.0
2021	16,089	11,005	68.4	2021	4,207	3,105	73.8
2022	15,479	10,312	66.6	2022	3,603	2,669	74.1

주: 1) 각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임.

[그림 2]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2013~2022년)

(단위: 명)



출처: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보건복지부, 2024,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Bl/mBin /EBchDtlPBgeDetBil.do?idx_cd=1421#

²⁾ 아동복지(생활)시설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이 포함되며, 공동생활가정에는 일반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포함됨.

출처: "연도별 아동복지(생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 보건복지부, 각 연도,



이와 함께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 변화에 따 라 시설 입소 아동의 특성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 는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이 주로 가정해체나 혼외출산이었으나. 최근에는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다. 2021년부터 감소 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최근 10년간 보 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 중 학대는 지속 증가 추세 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최근에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 했을 확률이 높다. 또한 ADHD, 경계선지능, 문제 행동 등 심리 정서 문제를 보이는 아동도 증가하고 있어(한국아동복지협회,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전문적인 심리·정서 치료 지원이 필요한 상 황이다. 즉 보호대상아동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가정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은 기존의 집단생활 형식 보호에서 개별 아동의 특성과 보건.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보호·양육 기능이 더욱 강하 게 요구되고 있다.

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현황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시설보호'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며, '가정보호'에는 입양, 가정위탁, 입양전위탁이 포함된다. 최근5년간의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2018~2021년에는 시설보호 비중이 60%를 상회하여 시설보호에 의존해온 것이 확인된다. 2019년이후에는 시설보호 비중이 차츰 감소하면서 2022년에는 48.5%로 감소하고, 가정보호 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시설보호 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가정보호를 확대하려는 현시점에서 향후추세는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중략]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표 2]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현황(2018~2022년)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3.918(100.0)	4.047(100.0)	4.120(100.0)	3.437(100.0)	1.881(100.0)
 시설 <u>보호</u>	2,449(62.5)	2,739(67.7)	2,727(66.2)	2,183(63.5)	913(48.5)
 가정보호	1,469(37.5)	1,308(32.3)	1,393(33.8)	1,254(36.5)	968(51.5)

출처: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보호조치 현황", 보건복지부, 2024,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BI/mBin/EBchDtIPBgeD etBil.do?idx_cd=1421#

있다. 시설보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대상아 동이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보호 조치된 경우를 의미 한다. 그러나 가정보호의 경우에는 다양한 의미로 해 석될 여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의미하나, 물리적 거주 형태 측면에서 '가정과 유사 한 환경을 갖춘' 보호, '가족과 같은' 보호 환경으로 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보호, 가정형 보호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실례로 현재 아동 양육시설에서는 시설 구조를 보강하고 소수 그룹별 로 아동이 종사자와 거주하면서 1인 1실 또는 2인 1 실로 생활하도록 하여 가정형 보호 환경과 거주 형태 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강조한다.

2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 시도

가. 인터뷰 방법

아동양육시설 현장 방문을 통한 시설장과의 대면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선정 기준은 시설 소규모화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아동양육시설 기관장이었다. 아동복지시설 자체적으로 소규모화를 시도한 사례는 찾기 힘들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였고, 직접적인 보호 서비스와 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시설장을면담하였다. 현장 방문 인터뷰는 2023년 5월에 한차례 이루어졌으며, 사전 동의하에 진행하였다. 시

설명은 익명으로 하며, 편의를 위하여 '양육시설 A'로 표기한다. 양육시설 A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장은 2008년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시설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이 사례는 2016년에 시설장의 의지로 시도된 경우로, 문서화된 내용이 아니라 시설장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인터뷰 내용을 서술하였다.

나. 시설 개요

양육시설 A는 1950년부터 운영된 아동복지시 설로, 1958년에 아동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고, 1977년에 사회복지 법인으로 인가되었다. 영아원 으로 운영되다가 2010년 시설명을 변경하였고, 신 축 건물을 개원하면서 현재까지 '자립홈'2) 3개 호 를 열었다. 현재 양육시설 A는 4층짜리 건물인데, 1~2층에는 사무공간과 공동공간, 3~4층에는 3개 의 자립홈이 있다. 자립홈은 흔히 볼 수 있는 연립 주택과 같은 구조로, 각 자립홈 현관 입구에 홈 번 호(예: 301호)를 부착하였다. 방문 시 현관벨을 누 르고 인터폰으로 응답하며, 거주자는 현관문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양육시 설 A의 자립홈은 2014년부터 가정형 거주 형태로 전환하여 일반 가정집과 동일하게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이 있고, 냉장고, TV, 세탁기, 침 대. 책걸상. 에어컨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중고

²⁾ 양육시설 A에서는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거주·생활 공간을 '자립홈'으로 명명하고 있다.



등학교에 재학하는 아동은 1인 1실을 사용하고, 초 등학생 이하의 아동은 2인 1실을 사용하고 있다. 각 호마다 성별 및 연령대별로 나뉘어 거주하고 있 으며, 종사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공동생활공 간은 식당, 활동실, 컴퓨터실, 작은도서관 등이다. 즉 최근의 전형적인 아동양육시설 거주환경을 갖추 고 있다. 현재에도 시설 규모가 크다 보니 원장을 포함하여 4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생활지도원만 31명이다. 아동 정원은 50명이나 현 원은 2022년 6월 기준 43명이며, 남아 30명, 여아 13명이다. 3세 이하는 7명, 유치부 11명, 초등부 14명, 중등부 6명, 고등부 5명이다.

다. 소규모화 시도 방식

시설장은 시설보호가 불가피하면서도 보호아동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 지역사회 일반아동이 시설 안으로만 들어와도 시설아동으로 오해하는지역 주민의 낙인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홈 운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첫 시도 이후 현재까지 인력 및 재정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시설 외부에서 소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방식으로 별도 운영하지않고 있다.

당시에는 기존의 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양육시설 A 인근에 위치한 연립주택을 임차하되양육시설 A에서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모두 총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법인에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5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남아 집, 여 아 집을 1채씩 임차하였다. 중고등학생 남녀로 거주지를 구분하였고, 각각 아동 4명과 종사자 1명이 생활하게 하였다. 종사자 1명이 양육시설 A와 그룹홈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거주하면서 자립체험관과 유사하게 아동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생활하되기본적인 규율을 지키도록 하였다. 공과금은 법인에서 직접 지출하고, 청소, 빨래, 장보기 음식 준비, 옷사기 등의 생활비는 아동들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아동만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선생님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라. 성과와 한계

시설장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결과는 남아 그룹홈은 실패, 여아 그룹홈은 성공이었다.

시설장은 당시 실패와 성공을 결정한 요인으로 '재정지원', '관리감독체계', '선생님과의 상호 신뢰 관계'를 지적하였다. 남아의 경우 외부 그룹홈 운영 6개월 만에 다시 양육시설 A로 돌아왔는데, 함께 생활하던 종사자와의 갈등이 큰 원인이었다. 시설에서 거주하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외부 그룹홈에서 생활하다 보니 남아들은 일부 반 항과 일탈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남자 종사자가 더욱 엄격히 규율을 관리하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시설장은 당시 종사자가 입사한 지 1년이 안 되어 남아들과 충분한 관계 형성이 부족한 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종사자 1인이 10대 남아들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선생님도 힘들어하고, 남자애들은 자기들을 옥죄고 압박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애들하고 선생님 나간 지 6개월 만에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애들도 시설에 있는 게 더 편한 것같다고 하고. 남자 선생님은 아이들과 사이가 좋았는데 애들이 규칙도 안 지키고 반항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붙잡아 두려니 더 험해지고. 선생님하고는 갈등이 심해지고, 자기들끼리는 사이좋았어요.

(양육시설 A 시설장)

반면 여아들은 외부 그룹홈에서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함께해 온 선생님과 생활하였다. 선생님을 엄마 같은 존재로 생각하여 종사자와의 애착이 깊은 상태였다. 무엇보다 미혼인 여성 종사자는 워킹 맘처럼 주간에는 양육시설 업무를 하고, 야간에는 그룹홈으로 나가 여아들과 장보기, 음식하기 등을하면서 1년 넘게 함께 생활하였다고 하였다. 지금은 7명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동양육시설에서는 12명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의 4명이 소규모로 독립된 공간에서 별도로 생활하는 것에 여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그 선생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희생을 많이 했어요. 여자애들을 어려서부터 키워서 애들이 엄마라고 생각해서 애정도 깊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과의 라포 형성이 잘되어 있는지였어요. 그 선생님은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데. 사비로 애들 선물도 사주고 외식도 많이 하고, 애들하고 이미 애정이 깊었던 관계였지요. 여자애들은 그때 나가 있을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하더라구요.

(양육시설 A 시설장)

그러나 여아들이 외부 그룹홈에서 생활한 지 1년 이 되어 가면서 월세 인상 요구가 있었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워 그룹홈 운영을 포기하게 되었 다. 이와 함께 낮에는 아동들이 학교에 간다고 할지 라도 부모처럼 하루 종일 아동들을 돌볼 수 있을 만 큼 종사자 역량이 감당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양육시설 A의 소규모화 시도는 기존 의 자립생활관과 공동생활가정의 혼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지원과 관리는 양육시설 A에서 총괄하되 10대 아동들이 시설의 외부 거주 공간에 서 자립을 체험하면서 종사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 식이었다. 시설장은 당시에는 재정, 인력, 관리체계 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소규모 그 **룸홈을 별도 운영하게 되었는데 다소 무모한 도전** 이었으나 아동들이 단체생활에서 벗어나 소규모 가 정 구조에서 생활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소규모 그룹홈 운영을 위해서는 적은 인원의 아동과 종사 자가 24시간 함께하면서 아동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장은 특히 최근 아동양육시설 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이 주로 학대나 방임으로 입 소하는 사례가 많아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문제행 동을 보이는 경우 향후 대규모 집단생활 방식의 시 설이 소규모화된다면 개별 아동에 대한 집중 보호 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3 공동생활가정의 원가정 복귀 중심 나. 시설 환경 부호

가. 인터뷰 방법

공동생활가정 현장 방문을 통한 시설장과의 대면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선정 기준은 가정 과 유사한 보호 환경을 구축하고, 원가정 복귀 중심 의 보호를 지향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이었다. 대다수의 보호대상아동은 원가정 구성원과의 관계 회복이나 가정 복귀가 쉽지 않아 관련 분야 전문가 의 추천을 받아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였고, 직접 적인 보호 서비스와 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시설장을 면담하였다. 현장 방문 인터뷰는 2023년 5월에 한 차례 이루어졌으며, 사전 동의하에 진행하였다. 시 설명은 익명으로 하며, 편의를 위하여 '그룹홈 B'로 표기한다. 그룹홈 B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장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운영을 총괄 하고 있다. 이 사례는 시설장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 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경험 및 성찰, 아동복지 학계의 제안으로 시도된 경우이다. 이 글에서는 시 설장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인터뷰 내용 외에 내부 문헌. 그룹홈 B 관련 연구 문헌(조소연, 노혜련, 2018)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아래 내용 중 일부는 그룹홈 B의 내부 문헌 자료를 활용하였으 나. 익명성 보장 차원에서 명확한 출처를 제시하지 는 않았다. 조소연과 노혜련(2018)의 연구에서도 기관과 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그룹홈 B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등록된 개인 시설 이다. 2002년에 설립되어 서울에서 여러 차례 장 소를 옮긴 후 지금의 경기도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 다. 현재 그룹홈 B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장기 임대하는 4개 층의 다가구 건물에 월세로 2층 과 3층의 일부, 4층 전체를 임차해 생활하고 있다. 2~3층은 층마다 3개 호실이 있어 그룹홈 B에서는 층별로 하나씩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여아 방으로 사용 중이며, 4층은 큰 면적의 1개 호실로 남아 방, 주방, 거실, 종사자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동공간이 다. 현 건물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12년째 임 대 중이다. 그룹홈 B의 보호아동 외에 다른 가구도 함께 거주하다 보니 가끔 마찰이 빚어지는 일도 발 생한다고 한다.

그룹홈 B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종사자 가 근무하고 있으며, 2명씩 돌아가며 상주하는 방 식으로 출퇴근한다. 대표는 1주일에 1박 2일 근무 하면서도 다른 종사자가 쉬는 명절이나 휴일에 대 체 근무하는 방식이었다. 그룹홈 B 종사자들에게 는 1년에 20일의 휴가가 부여되는데, 명절 휴가도 별도 부여된다. 대표를 제외한 종사자들은 모두 여 성이었다. 연령대는 주로 30대 이상으로 상대적으 로 젊은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2023년 5월 기준 그룹홈 B에서 생활하는 아동 은 총 9명으로 남자 4명, 여자 5명이다. 아동 연령 대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인데, 최근에는 가 정폭력 또는 학대 피해 아동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개인 방을 사용하는데 중고등학생은 1인 1실, 초등학생은 2인 1실로 거주공간을 구분하였다. 아동 대부분은 개인공간이 있지만 다른 아동들과 함께하는 4층 공동공간이용을 선호하고 있었다.

다. 운영 방식

그룹홈 B의 가정복귀사업은 2016년부터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의 재정지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 루어졌다. 시설장은 가정복귀사업이 이벤트성 또는 정기성 사업 형식이 아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족과 갑자기 분리 되어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작점으로,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보호아동과 가족의 일상적 관계 맺기'가 수시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공간이 비록 아 동의 원가정도 아니고 위탁가정도 아니지만, 향후 가족과 함께 살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주환경 역할 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시설장은 본인이나 시설 종사자들이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를 대체할 수 없고, 시설의 거주·생활환경이 아동의 집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호아동들을통해 깨달았다고 한다. 즉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그룹홈 선생님보다는 '부모가'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룹홈 B에서는 아동들이 종사자를 '쌤'이라

고 부른다. 그룹홈도 가정이어서 여타의 그룹홈에 서는 아빠, 엄마로 부르기도 하고, 원장님, 수녀님, 목사님, 삼촌, 이모로도 부른다고 한다. 그러나 그룹홈 B에서는 종사자들이 부모의 역할을 잠시 대신하는 존재로서 최소한의 몫만 겨우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어설픈 아빠, 엄마보다 선생의 도리를 한다는점에서 '쌤'이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아이들은 그룹홈(시설)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시설 아이는 몸만 커지지 마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시설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부모 처럼은 못 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아니고 쌤입니다."

(그룹홈 B 시설장)

가정복귀사업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아동이 그룹홈 B에 처음 입소하면 종사자들은 초기 1~2개월은 부모와 연락하지 않고 아동과 관계를 쌓아 가며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후 아동이 서서히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종사자들은 부모와의 만남을 준비한다. 최초 만남은 가정방문 형식으로 시설장과 종사자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식을택한다. 이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돌보는 당사자로서 부모에 대한 공손과 존중의 표현이자 관계형성(라포)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부모는 아동과 분리된 후 소식을 듣기 어려우므로 종사자들은 이들에게 아동의 소식과 현황을 알려주고, 부모 입장에서 아동과의 관계와 사연을 들어 준다.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그리고 아동의



애착 물건을 집에서 가져와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돕는다. 부모에게는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여 아동들의 일상을 보게 하며, 형제·자매가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룹홈 B로 방문하여 만나는 방식으로 보호아동이 분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룹홈 B 종사자들은 네이버 카페와 밴드를 통해 회원들에게만 아동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글, 사진, 동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자신, 퇴소 아동, 아동들의 가족, 결연가족, 후원자까지 아동들의 일상생활과 야외활동, 아동과원가정 가족·결연가족·후원자와의 만남,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정기적 SNS 활동은 가족관계 회복 및 유지의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종사자와 부모의 만남을 여러 번 가진 뒤 아동과 부모가 서로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 면 종사자, 아동, 부모가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여 러 차례 가진다. 이후 주말마다, 방학마다 아동과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양측의 동의하 에 만남을 확대해 간다. 관계가 회복되면 부모와 아 동의 여행에 안전을 위해 종사자 1명이 따라가는 '그림자여행'도 지원한다.

가족복귀사업의 핵심은 '관계 개선'이다. 그룹홈 B 시설장은 시설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의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관계'임을 강조한다. 그룹 홈 B에서는 별도의 부모 교육을 하지 않는다. 아동 과 부모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교육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시설보호 중인 상태에서는 새롭게 보호 조치가 결정되지 않는 한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부모가 그룹홈으로 찾아오는 횟수도 늘어나면서 종사자들은 아동과 부모의 관계가 유지되도록돕는다. 그리고 그룹홈으로 다른 아동들의 부모, 형제·자매 등이 방문하면서 가족과의 만남은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부모 사망이나 연락 두절로 아동이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부모가 수감된 상태의 무연고 아동 의 경우 종사자는 아동과 함께 부모의 묘지나 납골 당을 방문하거나 교도소 면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만나도록 돕는다.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보호자 를 찾고 만들어 주는 '대안가족' 결연을 진행하고 있다. 그룹홈 B의 대안가족은 수년간 봉사자로 활 동하면서 아동들을 오랜 기간 봐 오고 이미 친분이 많이 쌓인 관계이다. '봉사자'나 '후원자'라는 명칭 대신 '대안가족', '멘토'라는 책임감의 무게를 얹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아동들과 1:1 매칭된 멘토 선 생님들이 아동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주고 있다. 한 아동의 성장을 온전히 지켜봐 주며 자립할 때까 지 크고 작은 일들을 종사자와 아동이 함께 상의하 고 결정한다. 비록 원가정은 부재하나 대안가족을 통해 더 넓은 의미의 가정 복귀가 이루어진다.

그룹홈 B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다. 이 규칙들은 모두 가족관계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위해 중요하 게 작용하고 있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정 기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관계의 끈을 놓

[표 3] 그룹홈 B 규칙

구분	내용			
연락하기	• 보호아동의 입학, 졸업, 진로 선택, 학부모 상담, 일상생활 상담 등 종사자는 수시로 부모에게 연락하고 알림 • 부모도 자녀가 궁금할 때 언제든 연락함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	• 명절, 방학 때 아동들이 부모 집 방문 •집으로 갈 때는 성적표, 작은 사진 앨범을 보냄(매일 크고 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의 공백을 부모가 사진으로 추억하며 채울 수 있게 하는 배려임)			
아동 만나러 오기	• 아동의 입학, 졸업, 병원 등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언제든지 그룹홈으로 와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기 • 일 년에 한 번 있는 그룹홈 송년회에 부모 초대 및 참석			
여행 가기	•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퇴소 아동 만나기	• 부모와 살기 위해 그룹홈을 떠난 아동들과 만나기 • 매해 진행하는 그룹홈 전체 캠프(2박 3일)에 현재 보호아동, 가정복귀 아동, 자립 아동, 부모, 가족, 자원봉사자를 초대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듣고 나누기 • 언제든 만나고 싶을 때 찾아가, 찾아와 만나기			

주: 그룹홈 B에서 출간한 가정복귀사업 경험 나누기 자료에서 인용하였으나, 익명성 보장 차원에서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음. 출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가정위탁을 중심으로", 이주연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88.

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간, 종사자 선생님들과, 대안가족과, 멘토와, 퇴소하여 가족에게 돌아가고 자립한 아동과 함께 지지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그룹홈 B의 원가정 복귀는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다.

라. 성과와 한계

그룹홈 B 가정복귀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아동들이 원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룹홈에서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고, 원가정으로 복귀하고자하는 아동이 점차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해했으며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 가정복귀사업을 통해 결국 '아동들은 집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다

시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가정으로 바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동의 행동이나 표정이 밝아 지고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우울감도 줄어들었다.

부모가 아동과 분리되어 지내게 되면 부모로서의 박탈감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책임감이 점차 감소하게 되고 자녀 양육을 포기하게 된다. 서로에 대한 정보 부재, 연락 두절, 관계 단절이 점차 확대되면서 부모와 아동은 분리 상태에서 관계회복이나 원가정 복귀가 점차 어려워진다. 그러나그룹홈 B에서는 자녀와의 관계가 차츰 개선되며 가족의 역량이 커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져 함께하는 여행도 시도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만나며, 그룹홈 근처로 이사를 하기도 하였다(조소연, 노혜련, 2018). 또한 보호아동과 가족들은 종사자, 다른 아동의 가족이나 대안가족까지 지지체



계가 확장되었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지체계의 확장은 아동과 원가족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의 동력이자 성과이다. 이로 인해 그룹홈 B 아동들의 원가족, 대안가족이 함께 하나의 확대 가족이 되어 서로 지지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에 서 특별하다(조소연, 노혜련, 2018).

종사자는 업무 강도는 높지만 아동과 가족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사회복지사로서의 보람과 업무의 의미·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가정복 귀사업 실천을 통해 그룹홈 종사자로서의 전문성이확대되는 성과를 보였다(조소연, 노혜련, 2018). 그러나 실패할 수 있는 '결과'로서의 원가정 복귀에대한 염려와 원가정에 대한 불신을 일정 수준 갖고있다. 원가정 복귀는 물리적 결합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원가정과의 양질의 관계 회복 및 유지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모두 해당된다는 점을 인지하고양질의 '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다수 그룹홈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외부의 예산지원 없이 가정복 귀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근무 여건이나 처우가열악하여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시설장은 소수의 인력이 3교대로 근무하며 휴일 없이 24시간 아동들을 돌봐야 하므로 아동의 가족까지 만나 관계 개선을 도울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낯선 대체인력을 활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이 지적하였다.

4 나가며

가정보호의 대안적 사례 경험을 살펴본 결과 주 요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보호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명료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가정보호의 대안적 방안으로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를 성공 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관리체계 등 정책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탈시설 또는 시설 보호 탈피, 아동양육시설 기능 전환·전문화·소규모 화 등의 논의는 20~30년간 이어져 왔고, 다수의 연 구도 수행된 바 있다. 현 정부에서는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예정하면서 공동생활가정 인력 확충, 기능 보강 지원 확대, 아동양육시설 특성화·전문화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 이미 시설에서는 가정형 거주 형태로 기능 보강이 대부 분 완료되었으나 단순히 거주환경이 가정형이라고 하여 이를 가정보호라고 할 수 없다. 아직까지 아동 양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명료하지 않고, 관련된 개념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즉 시설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 고. 가정위탁. 가정보호. 가정형 보호. 가정형 거주 환경 등 유사 용어도 제각각 사용되고 이해된다. 또 한 수요 대비 위탁가정의 공급이 부족하여 시설보 호의 필요성과 의존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시설의 소규모화나 전문·특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유형에 상관없 이 가정 외 보호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함께 모색

해 나가야 한다. 적은 예산과 소규모 인력으로 시설이 자체적으로 변화하기만을 기대해서는 계속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원가정 복귀 중심 사례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가정 외 보호는 아동의 가족관계 회복 및 원가정 복귀를 최종 목표로 하여 일시적으로 사 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 유형에 관계없이 가정 외 보호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으 며, 원가정과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 서 단계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위한 초기 개입, 심리 상담, 신뢰 형성, 만남 지원, 사후관리가 보호 기간 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복귀사업의 핵심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이다.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의 핵 심은 '제도'가 아니라 '관계'이다. 사례관리를 담당 하는 종사자는 아동 양육 보호서비스 제공도 중요 하나,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고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동, 종사자, 아동의 가족 간 친밀한 관계 형성과 신뢰 구축이 선 행될 필요가 있다. 圖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 보건복지부. (2021). **2019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2018년 12월 31일 현재).
- 보건복지부. (2021). **2019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2018년 12월 31일 현재)**.

- 보건복지부. (2021). **2020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2019년 12월 31일 현재).
- 보건복지부. (2021). **2020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2019년 12월 31일 현재)**.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2020년 12월 31일 현재).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2020년 12월 31일 현재)**.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2021년 12월 31일 현재).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2021년 12월 31일 현재)**.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2022년 12월 31일 현재).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아동복지(생활)시설 현황 (2022년 12월 31일 현재)**.
- 보건복지부. (2024).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e-나라지표. https://www.i ndex.go.kr/unity/potBl/mBin/EBchDtlPBge DetBil.do?idx cd=1421#
- 보건복지부. (2024).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보호조치 현황**.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BI/mBin/EBchDtlPBgeDetBil.do?idx_cd=1421#
- 아동복지법, 법률 제19605호 (2023).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20).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 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이봉주, 박정민, 김선숙, 이재윤, 백아름, 김선영. (2022).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추진방향 연구. 보건복지 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주연, 이정은, 이상정, 임성은, 조정우, 김희진. (2023).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가정 위탁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성은, 황주희, 이민경, 강지원, 조영림, 김형모, 손병덕. (2020).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한 운영 모 **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소연, 노혜련. (2018). 공동생활가정 아동-친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 사례 연구: 탈북아동 공동생활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4**, 65-106.
- 한국아동복지협회,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기 능전환과 다기능화를 통한 보호아동을 위한 최상 의 양육환경 및 한국형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Alternative Care to Family-Based Care for Children in Out-of-Home Care: Experiences and Challenges

Lim, Sung Eun

(Korea Institute for Health Social Affairs)

Amid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and the changing trends in child policies within and outside the country, child welfare facilities in Korea have been called upon to move toward downsizing and deinstitutionalization. To further this progress, the government is proceeding with policies aimed at promoting family-type care settings where out-of-home care children can grow in a family-like living environment. However, what 'family-like living environment' in foster care means remains subject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Moreover, as the necessity of and dependency on residential-facility-based care persist, the transition to family-type care remains in progress. In this light, this paper examines earlier attempts at downsizing foster care facilities as a move toward family-type care, discuss group-home programs that aim ultimately to return children back to their own families, and draw implications from policy.